



경상남도체육회  
GYEONGSANGNAM-DO SPORTS COUNCIL

# 스포츠4대악

## 폭행 / 성폭행





경상남도체육회  
GYEONGSANGNAM-DO SPORTS COUNCIL

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,  
바로 폭행과 성폭행입니다



## 사례 1. 선배에 의한 폭행사례

### 자신을 나쁘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후배 폭행, 그 결과는 금메달리스트의 퇴출

A종목 유명 금메달리스트인 B선수가 술자리에서 C후배를 폭행하였다.  
이유는 선수촌 합숙 생활 중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을 낸다는 것이었다.  
두 사람은 호프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이러한 문제를 B선수에게 질책하며  
화가난 B선수가 주먹과 발로 C선수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였다.

그 결과 C선수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, 이에 따라 B선수는 폭행죄로 기소되었다.  
검찰은 “죄질이 무겁고,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”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.

## 사례 1. 선배에 의한 폭행사례

### 포차싸움

- B선수는 징역 1년 6개월 구형,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체육회장에게 A연맹에 폭력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해, 선수 자격정지 10년으로 사실상 운동계에서 퇴출되었다.

- 이로 인해 A선수는 올림픽 출전도 좌절되었다.



## 사례 2. 감독에 의한 성추행사례

### 마사지 빙자한 성추행, 국가대표 감독 보직 해임 1개월



국가대표 A감독은 훈련도중 허리를 다친 선수 B양을 본인이 직접 물리치료를 해주겠다고 치료실로 데리고 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B양의 엉덩이와 치골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다.

팀에 의무트레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여자선수를 직접 물리치료 한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. 이 사건에 대해 C연맹 선수위원회에서는 A감독에 대해 영구제명 의결을 하였으나, A감독의 재심청구에 따른 선수위원회 재심에서 무혐의 판정

## 사례 2. 감독에 의한 성추행사례

### 포치카항



피해자 B선수 측에서 대한체육회로 재심을 청구해 대한체육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동 사건을 성추행,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one-stop지원센터로 이첩 후 처리



C연맹은 A감독을 1개월간 보직에서 해임하고,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one-stop지원센터의 조사결과 무혐의 결과가 나왔으나 해당 감독에 대해 엄중 경고



이후 ‘스포츠공정위원회’ 규정 개정으로 성추행의 행위에 대해서는 선수/지도자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,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 처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



# 경남체육회 폭행/성폭행 관련 처벌 규정

##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(징계 사유 및 대상)

### 6. 폭력

징계대상	징계기준
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	<p>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,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,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,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,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</p> <p>①~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</p> <p>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이 그친 경우</p> <p>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,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p> <p>언어폭력(욕설, 비속어, 조롱,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, 위협,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)</p> <p>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</p> <p>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</p>

### 8. 성추행 등 행위(“7항”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)

징계대상	징계기준
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	<p>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</p> <p>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</p> <p>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,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</p> <p>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</p> <p>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</p>

### 9. 성희롱 등 행위(“7항”, “8항”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)

징계대상	징계기준
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	<p>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</p> <p>아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</p> <p>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, 성희롱 등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</p> <p>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</p> <p>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</p>

### 7. 성폭력(성추행,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)

징계대상	징계기준
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	<p>① 강간,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</p> <p>② 가학적·변태적 침해행위</p> <p>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(변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,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,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)</p> <p>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</p> <p>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</p> <p>⑥ 반복적인 경우</p> <p>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</p> <p>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(다른 변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,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, 증오감에서 추행한 경우,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)</p>

**폭행이 지도자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.  
폭행이 선수 간 위계질서 유지의 수단일 수 없습니다.  
성폭행은 상대방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.**



**신체적 폭행만이 폭행이 아닙니다.  
언어 폭력도 명백한 범죄입니다.**

**폭행 / 성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 
합리화될 수 없습니다.**

